

의안번호	제179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3년 1월 4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
----------	-----

제출연월일 : 2023년 1월 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의 무료 개방에 따라 입장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무료입장 전환에 따라 종전에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 “단체” 등 입장료 징수기준과 관련된 용어 정의를 삭제 (안 제2조)
- 입장권 매표와 관련된 문구 삭제 (안 제6조의 제목 및 제2항)
- 입장료 징수기준을 규정한 별표를 삭제하고, 체험학습프로그램의 재료비 징수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8조 및 별표)
- 입장료 면제 및 할인에 관한 규정 삭제 (안 제9조)
- 요금표 등의 게시 조항 삭제 (안 제10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미동산수목원”을 “수목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각종 시설을 개방하도록”을 “등 각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적극 개방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목원내”를 “수목원 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수목원 시설”을 “도지사는 수목원 내 시설물”로, “부적합할 때에는”을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있으며, 관람 기간의 제한과 그 대상 시설물은 산림환경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람이 제한되는 기간 및 대상 시설물은 산림환경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6조의 제목“(관람과 입장권 매표 및 입장시간)”을“(관람 및 입장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입장권 매표 및 입장시간은 오전 09시”를 “입장시간은 오전 9시”로 한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7조의 제목“(시설사용료)”를“(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

분 중 “시설”을 “시설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수목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도지사는 수목원에서 운영하는 체험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료비는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소장은 다음”을 “다음”으로, “자에게”를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술에 취한 자, 소란행위”를 “소란행위”로, “사람에게”를 “관람자의 관람에”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거나 혐오감 또는 악취를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산불 등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한 사람
6. 애완동물을 동반하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관람객”을 “다른 관람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어린이”란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교를 말한다.</p> <p>2.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교를 말한다.</p> <p>3. “군인”이란 신분증(휴가증을 포함한다)을 지니거나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4. “어른”이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p> <p>5. “단체”란 유료입장객 3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청장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수목원진흥기본계획에 따라 <u>미동산수목원</u>의 진흥실시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 ----- ----- <u>수목원</u>----- ----- -----.</p>

② 도지사는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목원의 산림과 학박물관, 목재문화체험장, 미동산생태관, 방문자센터, 난대식물원, 온실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각종 시설을 개방하도록 한다.

③ 도지사는 수목원내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와 전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개원과 휴원) ① (생략)

② 수목원 시설의 공사, 재해피해 복구, 전시관의 보수 등으로 개원하는 것이 부적합 할 때에는 시설물의 일부나 전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람기간의 제한과 그 대상 시설물은 산림환경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후단 신설>

제6조(관람과 입장권 매표 및 입장시간) ① 수목원의 관람시간

② -----

----- 등 각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적극 개방하여야 -----
-----.

③ ----- 수목원 내 -----

-----.

제5조(개원과 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수목원 내 시설물-----
-----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있다. 이 경우 관람이 제한되는 기간 및 대상 시설물은 산림환경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6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 ~ 다음 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수목원의 입장권 매표 및 입장시간은 오전 0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생략)

제7조(시설사용료) 수목원 내 산림교육센터의 사용료는 따로 조례로 정하며, 그 밖의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입장료 등) ①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목원 체험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에 대한 입장료 및 수목원에서 운영하는 체험학습프로그램 재료

-----.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 입장시간은 오전 9시-----.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 ----- 시설물-----.

제8조(입장료 등) ① 수목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도지사는 수목원에서 운영하는 체험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료비는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삭 제>

비는 별표와 같다.

제9조(입장료 면제 및 할인) 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한다.

1. 국민과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3. 만 6세 이하인 사람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및 그 동행 1명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삭 제>

따른 수급자

9. 학술활동, 산림교육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1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3.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14. 도지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5. 수목원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6. 도민대상수상자 및 명예도민
17. 수목원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수목원 소재지(청주시 상당구 미

원면을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18.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 등의
목적에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장료를 할인하여 징수
한다.

1. 충청북도민으로서 그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단체입
장료에 준함

2. 연구소장과 사전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각종 기관 또
는 단체: 단체입장료에 준함

3.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국제행
사 등에 참석한 후 그 영수증
(확인서 등을 말한다)을 지닌
개인 및 단체가 다음날까지
입장할 때: 개인의 경우 단체
입장료에 준하고 단체의 경우
단체입장료에서 1천원 추가
할인

제10조(요금표 등의 게시) 입장
요금표 등은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대표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입장과 관람의 금지) 연구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과 관람을 금지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관람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

<신 설>

2. 술에 취한 자,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3. (생략)

4. 산불발생이 우려되는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한 자

5. 애완동물을 동반하고 입장하는 자(단, 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은 제외)

<신 설>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제11조(입장과 관람의 금지) 다음

----- 사람에게 대해서는 -----
-----.

1. 술에 취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거나 혐오감 또는 악취를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소란행위 -----
-- 관람자의 관람에 -----
----- 있는 사람 -----

4. (현행 제3호와 같음)

<삭 제>

5. 산불 등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화기나 인화물질을 소지한 사람

6. 애완동물을 동반하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

수목원과 시설물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0. (생략)

11. 그 밖에 관람객의 관람이나
수목원의 관리와 운영에 지장
을 주는 행위

② 연구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퇴원을 명할 수 있다.

-----.

1. ~ 10. (현행과 같음)

11. ----- 다른 관람자-----

② -----

-- 사람-----.

관련법령 발췌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수목원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국립수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등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④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 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료 등) ①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2.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목원의 운영·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법 제1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수목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6.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영업행위
7.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8.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해당 수목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

② 국립수목원 또는 공립수목원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수목원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국공립수목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수목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사 유

-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의 무료입장 전환에 따라 입장료 징수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 등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번 개정에 따라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작성자 : 산림환경연구소장 김남훈